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주진오

I. 머리말	III. 청의 자주권 침해와 조선의 대응
II. 조일수호조규와 만국공법 체제로의 전환	IV. 청일전쟁과 일본의 '조선독립론' 허구성
	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말 조선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당시 일본의 조선정책을 규정짓는 근간을 이루었으며 청일전쟁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대사는 물론 전근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복잡한 국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 개념과 근대적 개념의 착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은 조선시대 한중관계의 형식과 사료의 용어 표현에만 의도적으로 집착하여 조선의 실제적인 자주성을 묵살하고 중국에 대한 종속성만 강조하여 왔다. 일본 학자들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얻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일제의 조선 침략을 미화하는 방편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외교형식이 되었던 조공-책봉의 관례나 황제에 대한 칭신의 표현만을 강조하여 현대적 의미의 식민지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¹⁾

특히 조선은 1637년 전쟁에서 항복하여 淸에 복속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조선조

1) 이영춘, <《同文彙考》의 편찬과 조선후기 淸關係의 성격>, 미발표 원고.

기의 對明 관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었다. 이것이 중국 측 자료에서 조선을 ‘屬國’으로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屬國’이라는 표현은 조선전기의 明代에도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이 용어가 조선후기 한중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의 실제적인 내용이며,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가졌던 조선의 地位에 대한 인식이다.

요컨대 조청관계는 외교문서의 修辭나 사행의 횡수와 같은 형식 논리에 얽매어, 조선이 청의 실질적인 종속상태에 있었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19세기 전반기 조선은 조공체제의 형식에 충실히 따르면서도 사행 무역에서 오는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변경 분쟁을 완충시킬 수 있는 공한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근대의 조청관계를 조공체제라는 형식논리로 단순화하여 외교주체인 조선의 존재를 배제시키고, 중국에는 일본에 의한 조선 개국의 施惠性を 強調하려는 논지는 재검토되고 경계되어야 한다.²⁾

그런데 이미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도 조선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①조선이 칙사, 조공사, 국경무역에서 보듯이 청의 종속하에 있었으며 ②정교금령이 자주라 하더라도 월남과 달리 조선은 구속이 강한 자주였으며 ③조일수호조규에서 일본의 의도는 조선을 책봉체제에서 독립시켜서 조선과의 사이에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조약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며 ④갑신정변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했으므로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고 ⑤결국 조선이 근대화과정에 진입하는 것은 청일전쟁에 의해서라고 주장하였다.³⁾ 그리고 청의 조선에 대한 규정력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이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⁴⁾

한편 일본 내에서는 조선의 국제적 지위가 중국의 속국으로서 일본이 이를 독립시켜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중화적 질서 속에서의 속국이라는 개념을 만국공법적 질서 속에서의 지배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갑오개혁의 주도세력들이 종속관계를 부정하고 자주독립국 노선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국제관계에서 ‘주권’(sovereignty)개념은 유럽에서 군주의 세속권력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종식되면서 진전된 일련의 관념과 이론에 의해 형성되었다. 웨스트팔리아

2) 이철성, <19세기 前半期 朝清外交關係의 特性>, 미발표 원고.

3) 原田環, 2005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그 근대화>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4) <비평문>, <집필자 답변> 《위 책》 참조.

조약(1648)을 기점으로 국제관계는 국가가 중심적인 행위자이며,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고 각자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체제’를 형성하였다. 분권화된 국제체제는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력균형 원칙, 국제법, 국제회의, 외교적 관행의 발전 등을 이루었고, 이러한 제도들의 등장과 함께 국가 간 체계는 공통의 규범, 규칙, 그리고 의무를 인정하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로 전환하게 된다.⁵⁾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체제는 1842년 난징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하여 동아시아 제국이 서구와 대외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서구 제국과의 조약체결은 단지 국교통상의 대상국이 서구제국까지 확대된다는 국가 간 관계의 양적변화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양상, 곧 국제질서관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중국적 세계질서 또는 조공체제 대신 서구적 국제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조선에서 주권 개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전통적 사대관계를 부정하고, 서구 주도 근대국제질서에 편입함을 의미한다. 주권 개념이 수용되기 이전까지 조선의 대외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대질서에 속해있었으며, 그 특징은 종주국과 조공국간의 불평등한 질서였다. 문호개방은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평등한’ 관계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혼란은 예정되어 있었다.⁶⁾

이 글의 목표는 객관적 차원에서 과연 당시 조선의 국제적 위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데 있다. 이 시기 국제관계는 물론 각국의 조선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 내부에서 인식되고 대응해 나갔던 실체를 명확하게 재구성해 내는 일이다.

II. 조일수호조규와 만국공법 체제로의 전환

1. 만국공법 체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과 대응

즉위 초기 고종은 서양세계를 전통적인 화이관념에 의해 이상화된 문명세계의 모습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전체를 위기의식에 휩싸

5) 정용화, 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문학과 지성사) 169~170

6) 《위 책》 171

이게 했던 丙寅年(1866) 프랑스 함대와의 격전을 비롯하여,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 辛未年(1871)의 미국함대와의 격돌 등 서양과의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만남과 충돌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73년 친정체제 수립을 전후하여 박규수(朴珪壽, 1807~1876)와 인맥적인 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 각별한 영향을 받게 되고,⁷⁾ 그로 인해 청을 통한 대외정보의 수집에 고종 스스로 간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조선이 시대적 대세를 외면함으로써 고립되는 국면으로 치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조선 조정의 입장이 도리어 중장기적으로는 나라를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점을 통감하게 되었다.⁸⁾

고종은 대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던 현실적인 권력관계의 추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연행사절들의 보고를 일방적으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들이 見聞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⁹⁾ 그의 질문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고종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세계의 중심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이 청국에 대해 갖고 있던 ‘帝國(혹은 大國)으로서 中華’라는 신화화된 이미지가 근간에 서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나아가 그 동요의 와중에서 서양화된 일본과 강력한 서양 열강들이 세력을 확산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고종이 감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고종은 대원군이 주도하고 있는 조선의 排外정책이 시대적인 대세를 무시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조선이 점점 고립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불만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고종의 이러한 상황판단은 대외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과 아울러 스스로 친정할 것임을 선언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들이 되었다.

7) 기왕의 논의들은 박규수와 개화파 세력 간의 관계, 혹은 박규수의 사상 자체에 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고종과 박규수의 관계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박규수와 고종의 관계에 관해서는, 강상규, <박규수와 고종: 문명사적 전환기의 고뇌하는 재상과 청년 국왕> 《2007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참조.

8) 丙寅(=1866)年 미국 선박의 조난이후 미국의 使臣들이 누차 和好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朝廷은 이를 거절하기로 하고 선생(=朴珪壽)이 往復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국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였지 선생 자신의 의견은 아니었다. 문을 닫고 和를 거절한 것은 선생의 本意가 아니며 부득이해서였다. 그때 나는 일찍이 선생의 곁에 있었는데, 선생은 계속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세계의 사정을 살펴보면, … 內治와 外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스스로 보존할 수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세에 어두워지고 약해져서 亡國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允植謹按> 《朴珪壽全集》 466~467

9) 《高宗實錄》 10년 10월 25일~11월 5일

박규수는 이때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대단히 전략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도리와 교린이라는 禮觀念의 연장선상에 서있으며, ‘保民의식’ 곧 ‘위민’ 정치의 대의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한편 고종은 대신회의(1875년 2월 5일, 5월 10일)를 통해 일본 측의 서계를 받아들여 하지만 박규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신중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서계의 접수를 반대하게 된다.¹¹⁾ 이에 박규수는 대원군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만약 저들이 一砲聲을 發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비록 서계를 받고자 해도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단연코 서계를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¹²⁾라면서 간곡히 설득을 시도했으나 끝내 대원군을 움직이지 못하였다.¹³⁾

2. ‘自主之邦’에 대한 이해의 차이

일본과의 수호조규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력하게 일어나자, 고종은 결국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가 이미 소모적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¹⁴⁾ 그리고 ‘舊交회복론’의 입장에서,¹⁵⁾ 尹致賢의 상소에서 거론된 바 있는 ‘일본

10) 박규수가 萬國이 나름대로의 禮를 가진 존재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상대국이 洋夷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의 ‘관계’가 禮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중시했다고 지적도 있다[原田環, 《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 1997].

11) 일본 측의 서계를 접수하려는 의도 하에 고종이 주관하여 열었던 당시의 조정회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承政院日記》 고종12년 2월 5일, 5월 10일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측 서계 접수 문제를 둘러싼 고종과 박규수의 주장에 관해서는, Deuchler, Martina, 1977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The Opening of Korea, 1875~1885* (Seattle and London: Univ. of Washington Press) pp.17~50 ; 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문학과 지성사, 서울) 163~209 참조.

12) 朴珪壽, <答上大院君(乙亥(1875)年 5月)> 《앞의 책》 758

13) 이때 박규수가 大院君에게 書翰을 보낸 것은 대원군을 설득함으로써 朝廷의 반대 분위기를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후일 朝日간에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 吳慶錫이 일본측의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1836~1916)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게 “현재 대원군은 물러나 있으나 거의 모든 대신들이 비밀리에 政事를 대원군에게 알리고 그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고 한 것이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대원군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한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外交文書》 明治年間 9, 27~39, 문서번호 6 ; 金正明, 1966 <朝鮮國政府內部ノ和戰兩派二關スル件(明治九年二月十三日)> 《日韓外交資料集成》 1, (巖南堂書店, 東京) 102~ 119·189

14) “倭(=일본)를 억제하는 것과 서양을 배척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번에 倭船이 온 것이 서양과 연합한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설사 倭가 서양의 앞잡이가 되어온다 하더

과의 수교는 그동안 잠시 끊겼던 교린관계의 복구이며 반면에 서양에 대해서는 척사적 입장을 고수 한다(與倭續好 匪洋伊和)¹⁶⁾는 논리에 따라 당시의 반대여론을 돌파하게 된다.¹⁷⁾

당시 조선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되는 과정에는 고종의 결단과 박규수의 조언 및 청의 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가운데 당시 국왕으로서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던 고종의 당시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조선 측에서의 주체적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가 파괴되고 근대 국제법질서로 편입됨을 선언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일본은 조약문 첫 조항에 ‘조선은 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였다. 조선 측은 전통관계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였지만, 일본 측의 입장은 조선이나 청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¹⁸⁾ 조일수호조규를 맺기 전후하여 조선의 자주독립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 1873, 1875년에 청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과 청국의 속방관계와 현황, 조선과의 조약에 관한 청국의 대응 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1876년 1월 10일 森有禮와 沈桂芳의 회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국은 조선이 속방이지만 모든 내치와 외교는 자주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다.¹⁹⁾ 이러한 청국의 태도는 이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에도 제기된 것이었다. 이때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며, 청국과 조선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한 종속적인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조일수호조규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으로서 앞으로 전통적인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어떻게 주권평등의 만국공법(근대 국제법)관계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새로

라도 역시 이에 대한 각각 대응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 《일성록》 고종13년 1월 23일
15) “이번 일은 일본과의 과거의 우호관계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성록》 고종 13년 2월 5일

16) 《고종실록》 13년 1월 28일

17) 이러한 논리는 기존에 국내적으로 막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 서양은 하나’라는 논리(倭洋一體論)를 다분히 의식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주진오, 1989 <한국근대 집권관료세력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歷史와 現實》 창간호 (한울) 36 참조.

18) Kim, Key-Huik,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 沈 : 소위 속국이란 본국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추어 공물을 진상하고 우리의 책봉·연호를 받드는 나라를 말합니다. 만약 그 나라가 우리 영토 내에 존재한다면 관계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나라가 우리 영토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내정에 간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 버마는 조선·유구와는 참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운 과정을 조선에 제기하였다. 당시 일본은 자주지방을 통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을 내렸고 조선과 청은 이를 통해 조선이 독립된 주권국이 아니라 속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계속해서 양국은 물론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애매하게 만들었고 동아시아 국제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즉 ‘조공과 책봉’, ‘사대와 교린’의 관계로 이어지던 중화질서와, ‘주권’과 ‘조약’ 관계, ‘국가 평등 관념’과 ‘무정부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근대국제질서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갈등하며 교차하는 상황에서, ‘자주국’이라는 개념은 애매모호한 해석의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조선은 자주국을 사대교린 질서 안에서 통용되던 원리, 즉 “外蕃은 그 내정과 외국 교제를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이를 교린 질서의 연장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자주란 곧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양국은 만국공법에서 말하는 주권 국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²⁰⁾

3. 만국공법체제로의 적극적 편입

이홍장은 유구병합(1879년 4월) 직후에 이유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화이론적 명분이 아닌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서양국가와의 조약관계를 강력히 권유하게 된다.²¹⁾ 한편 고종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의 귀국보고(1880년 8월 28일)를 행한 직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결심을 굳히고, 김홍집이 귀국시 일본에서 데려온 李東仁을 국왕의 ‘밀사’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요컨대 고종은 조정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에게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교섭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동인에게 특명을 내린 것이다.²²⁾

그리고 《조선책략》 등에 관한 논의를 조정회의에 부쳐, ‘작금의 조선의 배외정책이 조선을 고립무원한 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며, 조선의 전통적인 관례가 되어왔던 柔遠之義의 뜻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히려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해가는 것이 향후

20) 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0~201

21) 이때 이홍장의 의도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어디까지나 以夷制夷에 의한 ‘현상 유지책’의 차원에서 만국공법을 활용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중화질서와 만국공법질서의 절충과 동거를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의 1장 ; 2007 <일본의 유구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한반도와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을 참조.

2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卷, 437~447, 文書番號 342

조선에 있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암묵적으로 유도해낸다.²³⁾ 뿐만 아니라, 주요대신들에게 《조선책략》을 읽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이례적으로 요구함으로써,²⁴⁾ 미국과의 조약을 맺는데 대한 동의를 문서형식으로 받아내기도 하였다.²⁵⁾ 이후 고종은 1881년 1월 李容肅을 淸에 파견하여 자신의 대미수교 의사를 이홍장에게 전달하고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항을 8개 항목[請示節略]으로 정리하여 자문을 구하는가하면,²⁶⁾ 대내외적인 자강정책의 마련에 매달리게 된다.²⁷⁾

대원군 세력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朝野에 팽배해있는 뿌리 깊은 華夷관념, 조선의 유교적인 정치지형에서 발생하는 왕권에 대한 전통적인 견제구조 등으로 인해 고종은 대내외적으로 별다른 정치적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에 담긴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고종이 한편으로 《조선책략》의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정책전환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미수교방침을 확정짓고 중국이 이를 알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이홍장과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2~1895)간에 조미수교조약의 교섭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82년 2월 17일(양력 4월 4일),²⁸⁾ 問議官이라는 명칭으로 魚允中(1848~1896)과 李祖淵(1843~1884)을 淸에 파견하면서 고종이 내리는 지시는 당시 고종의 의도를 명확히 엿볼 수 있게 해준다.

23) 《承政院日記》 高宗17年 9月8日 ; <國王大臣對話書> 《日本外交文書》 明治年間13, 394~396, 附記2,

24) 《修信使記錄》 <諸大臣獻議> 189

25) “오늘날 세계각국이 모두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타국을 경멸하는 러시아의 위세를 저지하려 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바다로 통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외로이 의지할 데가 없사오니, 연합은 좋은 계책이라 할 수 있으며 나쁜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諸大臣獻議> 《修信使記錄》 189~190

26)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461~469, 文書番號 353-1, 353-2. 한편 고종의 지시를 받은 李容肅의 淸에서의 활동 및 淸에 제출한 8個條의 諮問[請示節略] 내용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서,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國大學, 서울) 126~131 ; 具仙姬, 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史研究》 (慧眼, 서울) 25~37 ; 金容九, 2001 《앞 책》 307~310 을 참조할 수 있다.

27) 이때 추진된 고종의 개혁정책에 관해서는 강상규, 2008 《19세기 동아시아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논형) 3장과 4장 참조.

28) 이홍장과 슈펠트간의 朝美條約 체결협상에 관해서는, 송병기, 《앞 책》 222~242 ; 김용구, 2001 《앞 책》 348~363 참조.

왕이 지시하기를 “事大의 節目은 마땅히 성의껏 해야 하지만, 형식에 구애되어 백성(民)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없다. 使臣의 파견문제와 北道の 互市문제는 하나하나 總理各國事務衙門 및 通商大臣(=李鴻章)과 의논하여 편리하게 하도록 힘쓸 것이다.” 또 지시하기를, “일본과는 이미 개항하고 통상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海禁을 고수하고 있으니 親中國의 뜻에 어긋난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이미 여러 항구를 개방하여 서로 무역을 하면서 지장 없이 왕래하므로 힘써 약속을 준수할 것에 대한 문제도 總理各國事務衙門 및 通商大臣과 의논할 것이다.” 또한 지시하기를, “근래에 외국이 우리나라를 엿보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通商大臣과 天津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측) 사신(=영선사인 김윤식)과 의논하여 국가에 유익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각별히 강구하여 확정할 것이다.”²⁹⁾

즉 고종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예의 관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은 고쳐야 하며, 일본과도 통상 수교하는 마당에 더욱 각별한 관계인 중국과 보다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친(親)중국’의 관점에서 도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국가에 유익한 바를 철저히 강구하여 청국 측과 꼼꼼히 협조해나갈 것 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요컨대 고종의 구상이란, 조선이 당장 안과 밖에서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친중국’의 입장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청국과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만국공법적 질서에 맞추어 재정립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은 대외정세에 관한 정보들을 관심 있게 접하게 되면서, 조선에게 있어 청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나라이면서도 이미 현실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소개한 이홍장의 서한 등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청국이 조선의 내치와 외정의 ‘자주’를 존중한다는 입장 [貴國政教禁令悉由自主 此等大事豈我輩所可干預]을 견지하면서 조선에 대해 호혜적인 관계강화를 강조하는 만큼,³⁰⁾ 고종은 이것이 한편으로 청국의 전략적 태도임을 의식하면서도,³¹⁾ 현실적으로 청국을 일종의 후원자로 삼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을

29)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2月17日 酉時, “上曰 事大之節 益當親恪 而其拘於文具貽弊民國者 不可安於舊例而止 使价及北道互市事 一一就議於總理各國事務衙門及通商大臣 務歸便宜也 上曰 既許日本開港通商 而於中國則尙守海禁 有乖親中國之意 中國與我國 已開各港 互相貿易 無碍往來 勉遵約束之意 亦就議於總理各國事務衙門及通商大臣也 又上曰 近來外國 有窺伺之意云 不可不先事綢繆 往議於通商大臣及留津使臣 凡有益於國家者 各別講確也”; 《高宗實錄》(同日條); 魚允中, 《從政年表》(1971,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28~129

30) 《高宗實錄》 16年 7月9日; <直隸總督文淵閣大學士 李鴻章抵橘山李相國書> 《龍湖問錄》 4卷 23冊;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368 문서번호 309-2

31) 이러한 관점에서 2차 수신사 김홍집의 귀국 보고 시 高宗은 ‘저들(=中國人)이 비록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양국가들과의 조약관계를 추진하고, 청국과의 관계도 만국공법적 질서에 따라 재정립해나가며 대내적으로 시급한 개화 자강정책에 착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고종은 대체로 지금까지 언급한 인식론적 기반위에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치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대외적으로는 전통적 중화질서의 틀을 넘어서는 ‘자주적’ 외교를 추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고종이 만국공법적 질서 하에 중국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1881년 11월의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개편에서 이원적으로 대외관계를 담당하던 事大司와 交隣司를 同文司 하나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³²⁾ 이후 텐진(天津)에 간 문의관 어윤중은 조선의 청에 대한 ‘사대형식의 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³³⁾ 이것 역시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고종의 구상에 의한 것이었다.

Ⅲ. 청의 자주권 침해와 조선의 대응

전통적 국제질서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서구세력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중국은 조선에 대해 여전히 전통적 우위관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약세를 조선에서 보완하려는 듯 종주권을 더욱 강화하려 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로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들어가려 하였지만, 청국은 임오군란을 내세워, 출병하여 조선의 내정까지도 직접적으로 간섭하려 하였다. 명분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하자고 하지만, 이를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곧 우리도 또한 富强之術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32)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11月 9日條, 11月 24日條. 하지만 이때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기 以前의 시점에서도 고종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방식대로 끌고 가려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이 1880년 겨울에 統理機務衙門을 만들어 事大司와 交隣司를 처음 설치했을 때부터 《新設衙門節目》의 <제15항>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조직의 운영자를 공식적으로 겸직하게끔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고종의 의도가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高宗實錄》 17年 11月 21日, 즉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정치적 여건 하에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던 고종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따라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가급적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해가기 위해서 형식상으로는 事大司와 交隣司라는 이원적인 대외 기구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어윤중은 청국의 周馥(1837~1921)과의 회담에서 “과거의 事大典禮를 폐지하고 自強을 도모하는 것이 오늘날의 계책(爲今日計, 只守舊典, 恐不如自強而拱衛上國也)”이 될 것이라면서 事大形式的 폐기를 요청하게 된다.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591~592, 문서번호 417-1

에 의한 사대관계 대신 힘에 의한 사대관계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내정외교는 자주라는 전통이 사라지고 이때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이 변질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1882년 10월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기반 한 양국통상관계를 근대적인 상민무역으로 이행시키려는 것으로, 명칭부터 조약(treaty)이 아닌 장정(regulation)이라고 하여 격을 낮추었다. 장정의 전문에는 기존 조공체제의 유지, 연호책력 사용, 책봉 간여 등을 통한 옛 속방 규정과, ‘超최혜국민대우권’을 통하여 각종 권리를 다른 조약국들 보다 우선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속방 규정을 명문화하였다.³⁴⁾ 이 장정은 청의 대조선정책의 일환으로 주장되고 강요된 것이었다. 청이 전통적으로 인정하여 왔던 종속관계를 이 시기에 이르러 굳이 명문화한 것은, 조선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진출하려는 열강에게 그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국은 ‘장정’에 근거하여 각종 경제적 이권을 탈취함과 아울러 조선의 海防權을 빼앗아,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 한반도에 생긴 힘의 공백을 북양함대가 메우게 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우장칭(吳長慶)과 위안스카이(袁世凱)는 병권을 장악하였고,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천수탕(陳樹棠)은 재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리홍장이 파견한 뮐렌도르프는 해관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외교까지 장악하려 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事大以禮字小以德’이라고 하는 청한종속관계의 유교적·도덕적 정신과 기반은 파괴되고 청국의 대조선정책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의 특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변질하였다.³⁵⁾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김윤식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국제법적인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오히려 ‘兩便’ 또는 ‘兩得’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청이 조미수호통상조규 1조에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기하려 할 때, 이를

“폐방은 중국에 대해서는 속국이지만 각국에 대해서는 자주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순리에 맞아 실재와 이치 양쪽 모두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³⁶⁾

라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고종에게는 청이 조선을 속방이라고 하면서 열강이 침략하는 경우 이를 구원하지 않으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자주권이 있음을 기재해 두면

34) 국회도서관, 1970 《구한말조약회찬》 하 392~400

35) 정용화, 《앞 책》 201~202

36) 김윤식, 《陰晴史》 52~53

각국과의 평등권을 누릴 수 있어 양쪽으로 득이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³⁷⁾

그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주권까지 뺏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국이 조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속국’과 ‘자주’는 아무 모순없이 공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편리하다는 것이다. 어윤중의 경우에도 일본인과의 대화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지칭하자 자주는 가능하나 독립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³⁸⁾ 그러나 실제로 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편론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분쟁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결국 조선을 청이 실질적 속방정책으로 몰아감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자주와 독립이 일치된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주권 개념을 적극 수용한 이른바 문명개화론자들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만국공법(근대국제법)에 관한 지식을 적극 섭취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은 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주권 개념의 수용은,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미국 선교사 윌리엄 마틴(W.A.P. Martin, 1827-1916)이 漢譯한 국제법 서적 《萬國公法》(초판 1864년) 등을 통해서였지만,³⁹⁾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후의 청의 개입이 조선의 자주적 개화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데다가 임오군란이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명치유신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일본을 모델로 한 근대화정책에 확신을 갖게 되면서 부터로 보인다.

임오군란 이후 문명개화론자들에게 최대의 현안은 이러한 청국의 실질적 속방정책에 맞서 어떻게 만국공법의 논리를 원용하여 타파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就新自立’을 기도하는 개화파에게 종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청국은 이제 주적이 되었으며, 갑신정변은 바로 청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대조선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갑신정변에서 개화파는 ‘조공허례를 폐지하고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킬 것’을 정령으로 내세웠다. 이는 결국 독립론을 제기한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청으로부터 자주권의 회복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사실 고종은 청이 대원군을 납치하고 임오군란을 진압해 줌으로서 권력에 복귀하였지만, 군대주둔을 매개로 가해오는 내정간섭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하고

37) 《위 책》 57~58

3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문서번호 417

39) 오영섭, 2004 <개항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한국》 (태학사) 122~123

있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조선으로서 청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외세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그 외세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했다. 개화과는 그 대상을 일본에서 찾았으나 일본의 의도가 순수하게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주고 말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개화과는 일본의 무력에 의존하여 정변을 일으켰으나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상만 남기고 참담하게 실패하였다.⁴⁰⁾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독립’을 다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게 되고 대신 중립화론을 포함하여 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자주를 추구하고자 하였다.⁴¹⁾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조선에서의 청의 지배는 더욱 강경해졌다. 갑신정변의 사후처리로 맺어진 텐진조약(1885년 4월 18일)에 의해 청일양국은 각기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청은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와의 밀약(1886년 8월)을 추진하였다가 노출되었고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였으며 청은 고종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1885년 11월 위안스카이를 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책으로 파견하였다.

위안스카이는 조청간의 외교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본래 직책을 넘어 청제의 유지, 총리아문복양대신의 문빙서신을 빙자하여 대소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조로밀약설을 구실로 고종을 폐위하고 대원군의 손자를 새 국왕으로 옹립하면서 대원군이 섭정복귀하게 하여 강력한 친청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위안스카이의 득세에 따라 조정의 모든 시책이 사전에 또는 즉각 그의 귀에 들어갔고 대부분 관료들이 고종보다는 위안스카이에게 아부하면서 그의 명령을 따랐다. 당시 청국과의 전통적인 관계의 변질과 위안스카이의 횡포는 조선의 많은 위정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⁴²⁾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청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영국·독일·러시아는 조선의 현상유지를 상책으로 삼아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였고, 일본 역시 청국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여 군비확장에 전념하면서도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점을 견지하되 적극적으로 정치문제화하지는 않는다는 ‘소극적 독립론’을 설정하면서 서양과의 불

40) 주진오, 2003 <1884년 정변의 정치체제 개혁구상> 《역사와 현실》 47

41) 주진오, 2004 <19세기 후반 문명개화론의 형성과 전개> 《앞 책》 (태학사)

42) 구선희, 《앞 책》

평등조약 개정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⁴³⁾ 요컨대 한반도에서 갑신정변 이후 청세의 우세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선 내외에서 동시에 조성되고 있었다. 조선정부의 과제는 이 종속관계를 표면상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자주적 외교를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고종은 외교 부서였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거치지 않고 내아문을 통하여 미국과 유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그 가운데 미국에 부임하는데 성공했던 박정양 일행은 이미 약속했던 三端마저 위배하고 청의 압력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고종이 보였던 청의 자주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외교고문 데니는 《淸韓論》(China and Korea, Kelly and Walsh, Ltd., Printers, Shanghai, 1888, 2)을 저술하였다. 이 《淸韓論》은 당시 조선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담론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문건이다.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위정자들이 청국의 부당한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데니는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쟁점화 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려 하였다.

《淸韓論》의 출판은 곧 조선의 속국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차이니즈 타임즈》(Chinese Times)는 데니가 불순한 동기에서 그 책자를 출판했다고 하며, 청국의 논리에 입각하여 청한관계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데니는 상해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뉴스》(Daily News)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주장을 보충했다.

이에 대해 외교고문으로서 데니의 전임자였던 뮐렌도르프가 데니의 청한론에 대한 반박문을 썼다. 청한론을 둘러싼 데니의 처신은 당연히 청국의 분노를 샀고, 이것은 조선의 대러시아 관계에 지나치게 나섰다가 해임된 뮐렌도르프에게 조선 복귀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淸韓論》에 대한 반박문을 영성한 내용으로나마 영문으로 작성해 조선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임을 강조하여 중국 측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국이 조선의 속방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였던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이 조선에 가했던 노골적인 예속화의 결과이기도 했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국군은 조선의 자주화 움직임에 췌기를 박고 종래의 조공체제 수준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주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수용과 활용은 유길준의 《국권》(1888 ~1889년 추정)에서 발견된다. 유길준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임오군란이후 청국이 조선에 대해 직접적, 강

43) 高橋秀直, 1988 <1880年代の朝鮮問題と國際政治> 《史林》

압적으로 종속관계를 강화하려하자 근대국제법의 주권평등 원리에 입각하여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⁴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제일의 목표로 내걸고 ‘就新自立’을 표방하면서 감행한 ‘개화당’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내정간섭을 더욱 강화하였다. 서구열강과 주권평등의 근대국제관계와 청과의 종속관계가 이중적으로 작동하게 되자 1888년경 뮐렌도르프와 테니를 중심으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이때 유길준은 조선의 처지를 ‘양절체제’로 규정하고 조선의 자주적 지위를 변호하였다.⁴⁵⁾

IV. 청일전쟁과 일본의 ‘조선독립론’ 허구성

1894년 조선정부는 농민전쟁을 자력으로 진압할 수 없자, 청국에 군대를 요청한다. 일본은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조선에 파병했다. 이때 일본이 청국과 전쟁을 개시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의 나라 조선’이라는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속방을 천명하고 있는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이 청에 예속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생명선’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국이 조선에 출병하면서 반란으로부터 속방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자 일본은 1894년 6월 7일 조선국을 귀국의 속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청국에 항의하였다.

또한 청국군이 아산에서 낸 포고문에서 계속 ‘속국’, ‘변속’ 등의 용어를 사용하자 이를 구실로 조선정부에도 항의하였다. 청국군의 속방 천명은 일본이 추구하는 조선독립론을 부정한 것이므로 청병을 조선국 국경 밖으로 축출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즉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은 그 독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방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청군의 즉각 철병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병력으로 격퇴시킬 것이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단행하면서 조선정부에 대하여 조선으로부터 청군을 퇴거시킴으로써 귀 정부(조선)는 수약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폐기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명분은 청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수차 강조된다. 1894년 7월 23

44) 정용화, 《앞 책》 171~172

45) 原田環, 1985 <1880年代前半の閔氏政權と金允植>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 김봉렬, 1989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오오토리 게이스케와 조선의 외무대신 김윤식 사이에 서명된 ‘잠정합동조관’에서도 “일본정부는 본시 조선을 도와서 그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 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양국 정부에서 위원을 파견 회동케 하여 논의 결정케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8월 26일의 군사동맹을 위한 조약에서도 그 첫 조항에 “이 맹약은 청국군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고 조일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일전쟁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조선정부가 부담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에서 그 명분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조선 스스로 내정개혁과 자주독립을 천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노우에 공사는 20개조 개혁안을 조선에 요구하였는데, 그 제20항에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위와 같은 내정 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國是로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요구에 응하여 1895년 1월 7일 고종은 誓告文과 洪範 14조를 국내외에 반포한다. 그날 고종은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나라의 자주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근대적인 개혁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서약을 행하였다. 이 서고문과 홍범 14조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보면, 국외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천명하였고, 국내적으로 개혁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청국과의 종속관계의 변질로 인해 자주와 독립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독립국’이 되었다.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에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위와 자주독립을 훼손할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貢獻·典禮 등은 앞으로 영원히 폐지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이제 조선으로부터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것은 과거 청이 자행했던 자주권의 침해보다 더욱 심한 외압을 의미하였다.

V. 맺음말

그런데 조선 후기의 외교 형식은 조선전기의 대명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조공과 책봉을 근간으로 하는 사대외교였지만, 조선의 영토나 정치적 자주권은 완전히 보장되었다. 외교

의 형식면으로 본다면 청의 황제와 조선의 국왕 사이에는 천자와 제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 조선은 거의 완전한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한중관계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조선정부의 과제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단히 험난한 것이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한 조선 정부 내의 논란이 여러 형태의 정변으로 표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고종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청이 실질적 지배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던 점이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열강과의 조약체결을 통해 조선이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전제 하에 청의 속방화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일본은 청이 조선의 속방임을 내세워 자신들은 조선의 독립을 후원하는 존재로 강변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을 버거운 상대였던 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었다. 일본의 조야가 지원했던 갑신정변의 경우 독립이라는 이상이 있었을 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적, 국내적 조건 무엇도 갖추지 못했던 상태였다. 그 결과 오히려 청으로 하여금 조선의 국권을 더욱 침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일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의 속방론을 제거하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 전보다 더욱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1895년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은 조선을 배제한 채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사실상 조선에게 있어서 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미 조선은 독립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청과 싸워서 조선의 독립을 얻어 주었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더욱이 조선의 독립 인정은 곧 이은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 정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청의 속방보다 훨씬 강력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일본 측에서 조선이 받았던 청의 속방시기를 강력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행했던 보호국화 정책과 식민지 지배에 비교하면 대단히 미약한 것이었다.

결국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 정책이 삼국간섭으로 좌절하자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결국 아관파천으로 그동안 쌓은 공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후 고종은 다시 친정체제를 수립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하였으며 독립문 건립추진위원회로 출발했던 독립협회를 지원하였다. 이후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하도록 한다.

결국 일본이 청으로부터 조선을 구원하여 독립국으로 만들어 근대국가로 출발하게 했

다는 논리는 당시 일본 정부의 침략의지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왕실과 정부가 청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주권 회복을 시도함은 물론 독립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1905년 보호국으로 전락하여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마침내 식민지로 전락했던 것은 바로 일본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조선독립론의 의도와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비평문]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1. 본 논문은 19세기 서세동점 하에서의 조선의 국제적 동향을 고종을 비롯한 조선 내부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I. 머리말). 평자도 오랫동안 이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Ⅱ. 조일수호조규와 만국공법 체제로의 전환’, ‘Ⅲ. 청의 자주권 침해와 조선의 대응’이 언급하고 있는 조일수호조규, 만국공법, 박규수(본 논문에서는 사망 년도를 1876년이라 하는데 양력으로는 1877년), 李鴻章과 李裕元 사이의 서간, 《朝鮮策略》, 임오군란, 兩截體制, 갑신정변 등은 줄져 《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 1997)에서 이미 다룬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그 결과 느낀 점 중에서 몇 가지를 적어 보겠다.

2. 방법론으로서 고종을 비롯한 조선 내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지만 고종의 동향을 일관된 형태로 쫓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갑신정변(1884년)에서의 고종의 동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총체적으로 고종이 대외 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이며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3. 고종의 대외 정책을 다룬 부분에도 의문이 있다.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2월 17일 등의 고종의 발언에 대해, “요컨대 고종의 구상이란, …(중략)… 청국과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만국공법적 질서에 맞추어 재정립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 어관 20~21쪽)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종의 발언 중에 있는 ‘親中國’은 조선이 개국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駐日清國公使館 參贊 黃遵憲 《朝鮮策略》(1880)의 한 구절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에서 나온 것으로, 청과 조선의 종속 관계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줄고 1999 <『朝鮮策略』의構成と論理> 芝蘭集編集委員會, 《芝蘭集-好拉隆司先生退官記念論集-》(岡山)). 고종은 이러한 ‘친중국’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가 청과 조선의 대등한 ‘만국공법적 질서’ 형성을 지향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덧붙여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은 청에 대한 예속 강화(책봉 체제)와 일본, 구미에 대한 개국(조약 체제)이라는 양절체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895년의 흥범 14조의 제 1조는 ‘친중국’ 노선을 반성한다는 것이다.

4. 위의 2와 관련되는 것인데, 조선 정부 내부의 대외 정책을 둘러싼 동향이 검토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외적으로 거국일치를 이뤘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 임오군란에서 갑신정변에 걸친 사대파(수구파)와 독립파(개화파)의 동향, 사대파(수구파)와 청, 독립파(개화파)와 일본의 구체적인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5. “사실상 조선에게 있어서 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미 조선은 독립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청과 싸워서 조선의 독립을 얻어 주었다는 서술은 잘못이다”(한국어판 29쪽)라고 하는 한편, “조선은 …(중략)…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독립국’이 되었다”(한국어판 28쪽)라고 서술하여 모순된다. 양절체제의 타파=조선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집필자 답변]

1. 고종이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조선독립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필자가 2003년 4월에 발표했던 <1884년 정변의 정치구조 개편구상>에서 1882년 11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서신을 바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고종의 구상을 중심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고종의 입장을 서술한 것이다.

2. <조선책략>에서 제시되었던 친중국이라는 것은 조선의 외교를 위한 논리였을 뿐 종속관계의 강화라고 보지 않는다. 당시 조선이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을 활용해서 조선의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써 당연히 해야 할 바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도 밝혔듯이 고종은 끊임없이 중국의 종주권 강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종주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조선 왕실의 입장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과장한 것은 일본이 이를 명분으로 삼아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시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3. 물론 당시 조선에서의 대외정책은 거국일치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 밝힌 논문과 함께 필자가 2003년 12월에 발표했던 <한국근대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왕권의 역할 (1880-1894)>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 정부 내의 다양한 대외 정책론을 다루는데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4. 한국어에서 따옴표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필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또는 현재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所謂 말해서’ 정도가 될 것이다. 필자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독립국이 되었다는 논리가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자의 진의는 바로 ‘사실상 조선에게

있어서 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미 조선은 독립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청과 싸워서 조선의 독립을 얻어 주었다는 서술은 잘못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이 되지 않는다.